



THE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275 Seventh Avenue, 9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627-2227

Fax: (212) 627-9314

비보험 이민자를 위한 공공의료혜택의 권리

응급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

뉴욕주내 모든 이민자들은 법적 신분이나 의료비 납부 능력과 상관없이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응급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내 모든 병원의 응급 치료실은 환자의 법적 신분이나 진료비 납부 능력과 상관없이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진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전문적이거나 제한된 진료만을 제공하는 병원들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이러한 병원에서는 메디칼 직원들이 환자의 공공 의료혜택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이민자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 없는 이민자, 그리고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뉴욕주 시민과 동등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앰블런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911을 통해 앰블런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치료실에 도착한 환자는 그가 응급 상황에 처했는지를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응급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 환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통증 등 심각한 증후군을 보일 경우
- 즉각적인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환자가 심각한 위협에 빠지거나 신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만약 환자의 상태가 응급 상황으로 간주된다면 병원은 반드시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된다는 것은 환자가 병원을 떠날 때, 환자의 응급 상황이 더욱 나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하다면 환자는 특별한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급 상황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비보험 뉴욕주 거주자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건강 센터, 공립 병원, 예방 및 치료센터, 장기투숙 치료센터 등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나 기관은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거나 환자의 상태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진료비 납부 방법 - 공공의료혜택

많은 이민자들은 진료비 납부를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뉴욕주내 모든 이민·비이민자들은 19세 미만 아동을 위한 '아동건강플러스(Child Health Plus)', 임산모를 위한 'PCA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이민자 또는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응급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내 모든 합법적 이민자들은 메디케이드 및 가족건강플러스(Family Health Plu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에 몇 년 동안 거주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은 자체의 소득 규정 등을 가지고 있어 일부 이민자들은 그들이 저소득층일지라도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를 제외한 다른 공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응급 상황이거나 임신중일 때만 공공 의료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납부 방법 - 납부액 감면

연방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건강센터와 뉴욕시보건복지및병원협회(HHC: NYC's Health and Hospital Corporation)는 '무료'또는 환자의 진료비 납부 능력에 따른 진료 납부액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건강센터와 뉴욕시 HHC병원 등은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할 재정적 여유가 없어도 반드시 환자에게 진료해야 하며, 과도한 진료비 납부로 인한 환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의 뉴욕시보건복지및병원협회의 방침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어떠한 환자도 경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될 수 없으며,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경우는 무료가 아니며, 모든 환자에게 적정가의 진료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내 개인 또는 공립 병원에서 소득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납부액을 책정한다고 할지라도, 때론 소셜 워커, 원무과 직원, 또는 행정 감찰관들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진료비 납부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욕시보건복지및병원협회 치료 센터, 건강센터, 그리고 개인 병원 등은 환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자들은 소셜 워커나 재정 상담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공 의료혜택은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보험 이민자의 궁금증

1. 응급치료실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민서비스국(옛 이민국)에 보고합니까?

메디케이드, 가족건강플러스, PCAP, ADAP, CHIP, 응급 치료 등의 의료 혜택을 이용했거나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정보를 시민·이민서비스국(옛 이민국)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직원, 메디케이드 담당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 어느 누구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민서비스국(옛 이민국)과 주고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저는 의료 보험이 없는 서류미비자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저의 이민 신분에 대해 병원 직원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진료를 받기 전에 어느 누구도 이민 신분에 관해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수혜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3. 병원에서 저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서는 선생님이 공공 의료혜택 수혜 자격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선생님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다고 해서 선생님의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단지 선생님은 병원 직원에게 '진료비 납부 방법에 관해 상담하고 싶다' 고만 말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진료비 납부 방법에는 공공 의료보험, 소득에 따른 진료비 납부액 감면, 무료 진료 등입니다.

4. 저의 법적 신분의 변경 - 예로 합법적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이나 비서류미비자의 노동 허가증 취득 등 - 전에 발생했던 메디케이드 비용을 제가 갚아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께서 공공 의료혜택을 신청할 당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변조 또는 위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메디케이드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5. 응급 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까?

선생님의 응급 처치가 거부되었다면 연방법(EMTALA)과 뉴욕주법(EMSRA)에 따라 선생님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나 선생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뉴욕이민자연맹(NYIC, 212-627-2227) 또는 Legal Aid Society(212-215-3575)로 연락하십시오.

위의 자료는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공공이익을위한뉴욕변호사모임(NYLPI)과 공공복지제도위원회(CPHS) 자료를 바탕으로, NYC Health and Hospital Corporation, Legal Aid Society-Health Law Unit, CPHS, 그리고 Greater Upstate Law Project의 법적 검토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한 원본 자료인 '뉴욕시 비보험자들을 위한 권리(The Rights of the Uninsured in New York City)'를 받고 싶으시면 공공이익을위한뉴욕변호사모임(NYLPI, 212-244-4664)로 전화하십시오.